

제316회 정례회
2012. 12. 20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2. 12. 20.(목)
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2년 12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12월 13일

(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)

가. 제안이유

- '08년 정부의 “공기업 선진화” 정책에 따라 '12.2.1일자로 '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'이 체결되어,
-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민간운영자로 이전됨에 따른 시설사용료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됨에 따라,

- 우리도는 공항 운영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참여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고,
- 타당성조사 결과,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참여에 따른 공공성 및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분출자하기로 의결하였음.
- 이에,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청주공항관리(주) 자본금의 3%를 지분출자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의결 받고자하는 출자내용

- 청주공항관리(주) 자본금의 3% 지분출자
 - ※ 지분 3% 보유권한
 - 임시주총 소집 요구권, 주주제안권, 집중투표청구권, 검사인선임 청구권, 이사·감사해임 청구권, 회계장부열람권, 대표소송제기권 등
- 출자금액 : 8억원
 - ※ 출자금액은 우선 매각금액(280.5억원)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, 향후 청주공항관리(주)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출자액 확정
- 출자방식 : 단순출자(민간의 경영 자율성 보장)
- 출자시기 : 청주공항관리(주)의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인수 후 자본금 증자 시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은 청주국제공항 민간 운영자인 청주공항관리(주)에 대한 공항운영의 공공성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,
- 「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4호」 및 「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」의 규정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에 대한 자본금을 출자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※ 청주공항관리(주) 주주구성 및 지분율

업 체 명	지분율(%)	비고
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	50.2	전략적 투자자(운영)
ADC & HAS	29.9	전략적 투자자(마케팅)
흥국생명(주)	19.9	재무적 투자자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 비용추계서 등

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출자비율 : 청주공항관리(주) 자본금의 3%
- 출자방법 : 단순출자
- 출자시기 : 청주공항관리(주) 운영권 인수 후 자본금 증자 시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에 따른 공항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도의 지분출자 필요

3. 관련조문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의 제한)
-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(적용 범위)
-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(설립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청주공항관리(주) 운영권 인수 후 자본금 증자시 자본금의 3% 출자

나. 추계 결과

- 매각대금(280.5억원) × 3% = 800,000천원
- 향후 청주공항관리(주)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출자액 확정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 자체재원 사용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문화관광환경국 관광항공과장 민광기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3년)	2차년도 (년)	3차년도 (년)	4차년도 (년)	5차년도 (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					
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	800,000					800,0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800,000				800,000
	지방세	800,000				80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

※ 지방자치단체 지분출자 사례

- 제주항공(주) : 제주도 5,000,000천원
- 에어부산(주) : 부산시 2,510,000천원
- 이스타항공(주) : 군산시 1,000,000천원

관계 법령 발췌

【지방재정법】

지방재정법
<p>제18조(출자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(出資)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

【지방공기업법】

지방공기업법
<p>제2조(적용 범위)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,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업4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(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) <p>제77조의3(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(이하 "출자법인"이라 한다) 또는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(이하 "출연법인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(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, 사업성, 출자·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.</p>